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91
------------	------

2024년 11월 29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 상정일자 :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 늘봄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154명 (7,722명 → 7,876명)

- 교육전문직원

- : 증 154명 (588명 → 742명)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특정직 정원 조정: 증 154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증 154명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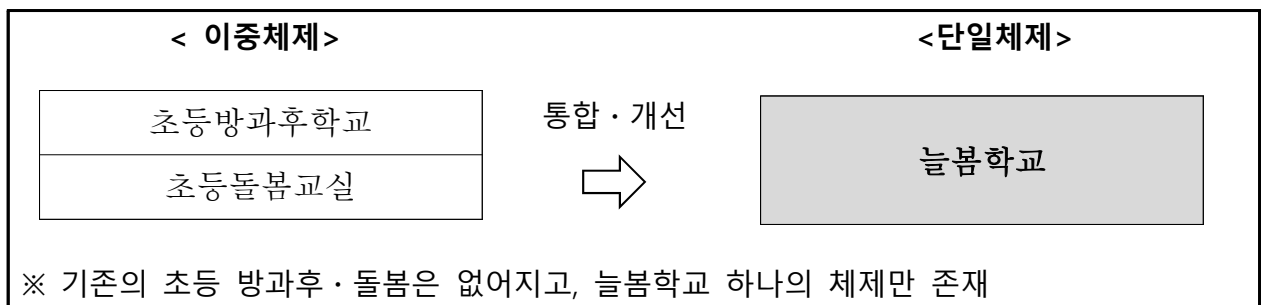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91호로 제출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늘봄학교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표-1] 늘봄학교 단일체제로 전환



출처: 교육부(2024).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안내. 6페이지

- 교육부는 이와 같은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공간, 프로그램, 조직, 인력 등을 개편·신설하였고, 특히 인력과 관련하여 기존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이외 늘봄학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늘봄지원실장 및 늘봄실무직원 인력을 신설하였습니다.

- 늘봄지원실장은 개별학교 늘봄학교 업무의 관리자로서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인력 및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 중에서 2년간 교육연구사로 전직, 근무하고 임기 종료 후 연장없이 교사로 복귀하는 구조입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1)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직원의 임용 등 인사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기가 정해진 보직을 운영할 수 있어 이미 임기제 장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 사례도 있는 상황입니다.

[표-1] 늘봄학교 단일체제 전환에 따른 인력 신설 현황

구분	지금까지	앞으로
체제	초등 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	늘봄학교
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	늘봄과정
공간	방과후교실(일반교실, 특별실 등) 돌봄교실	늘봄프로그램교실 늘봄교실
인력	(신설) (신설)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늘봄지원실장(공무원) 늘봄실무직원(공무원, 공무원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늘봄전담사(공무직) 늘봄프로그램강사(계약직)
프로	초1 에듀케어	삭제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림	(신설)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조직	학교	(신설)	학교	늘봄지원실
	교육(지원)청	방과후·늘봄센터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출처: 교육부(2024).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안내. 7페이지

○ 이에 교육부에서는 2025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²⁾에 서울시 교육전문직원 인력을 154명 증가하여 예산을 편성·통보하였는바, 2025년도 서울시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예산은 885억 4천 3백만원으로 2024년(716억 1천 9백만원) 대비 23.6%(169억 2천 5백만원) 증가한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³⁾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⁴⁾에 따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르면 교육행정기관 정원 관리는 교육감이 조례⁵⁾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늘봄학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육부가 늘봄지원실장 인력을 신설하고자 서울시교육청에 ‘임기제 연구사’ 154명의 인건비를 증액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이는 안 제2조의 정원 총수 및 교육전문직원의 수를 개정하고, 안 제4조와 관련하여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등을 증원하는 것인바, 법률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늘봄지원실장 선발 공고를 2024년 10월 30일에 게시하고, 2024년 11월 18일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 11월 23일에 선발 평가를 시행한 상황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 심의(2024년 12월 20일) 이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늘봄지원실장의 자격이 현직 ‘초등교사’로서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선발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60조제1항⁶⁾에 따라 ‘시험’ 방식에 의한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6) 「교육공무원법」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제12조제1항제4호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

경격령쟁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와 같은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은 이후 일반교사 정기 전보 등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매년 3월 1일자로 이뤄지는 교원 전보 시기 등을 고려할 시 12월 의회 의결 이후 관련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⁷⁾.

○ 현재 늘봄학교는 현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84 “국가 교육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이미 2025년 총액인건비에 늘봄지원실장(임기제 연구사) 인건비를 증액 하였고, 내년 3월부터 늘봄지원실장을 학교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교원 전보 등의 절차가 2월 중에는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월 의회 심의 이후 전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2024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도 예산안 심의 이전에 늘봄실무사 채용절차를 거치고 심의 이전 인건비까지 편성하여 안건을 제출하는 등⁸⁾, 늘봄학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매번 「지방자치법」 제47조제 1항제2호⁹⁾에서 규정하는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전에 교육부 등과 긴밀히 협의·건의하여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

한 경우

5. 생략

② 생략

7)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2024.10.4.). 임기제 교육연구사(늘봄지원실장) 선발 관련 교육전문위원실 설명자료 및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2024.9.12.). 늘봄지원실장 선발 배치 운영 세부 방안.

8)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2024.6.1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4 페이지.

9)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생략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 생략

② 생략

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2180-8270)
----------	----------------	-------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91
----------	------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 늘봄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154명 (7,722명 → 7,876명)

- 교육전문직원
: 증 154명 (588명 → 742명)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특정직 정원 조정: 증 154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증 154명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2024. 10. 5. ~ 2024. 10. 8.): 의견 없음

- 단축사유: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41조1항 단서

나.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다. 협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첨부자료

-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별첨 1】

- 2)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 3) 비용추계서: 【별첨 3】
-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4】
- 5)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통보 확인서 【별첨 5】
- 6)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별첨 6】
- 7) 관계법규: 【별첨 7】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첨 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722”을 “7,876”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88”을
“742”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876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25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40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74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691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722명</u>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 <u>7,876명</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교육전문직원 정원 <u>588명</u>						3. ----- <u>742명</u>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7,722					총 계	7,876				
정무직 계	1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25					일반직 계	7,125				
2·3급	1		1			2·3급	1		1		
3급	9		9			3급	9		9		
3·4급	3		3			3·4급	3		3		
4급	44		33	11		4급	44		33	11	
4·5급	7		7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40					5급 이하 소계	7,040				
전문경력관 소계	7					전문경력관 소계	7				

현행						개정안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연구사 소계	14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588					특정직 계	74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537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691				

【별첨 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로 지방공무원 154명* 증원, 이에 따라 인건비 상승

* 임기제 교육연구사(늘봄지원실장) 154명(초등 149명, 특수 5명)

2. 비용추계의 전제

특정직 154명 증원에 따른 1인당 인건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소요 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구분	-						
	소계(a)						
세입	인건비	18,526,046	19,081,827	19,654,282	20,243,910	20,851,227	98,357,292
	소계(b)	18,526,046	19,081,827	19,654,282	20,243,910	20,851,227	98,357,292
□ 총 비용(a-b)		18,526,046	19,081,827	19,654,282	20,243,910	20,851,227	98,357,292

※ 재원: 보통교부금

※ 비용추계 단가: 2025년 총액인건비 전문직 단가(120,299천원)

※ 비용추계 방법(154명 기준 5개년도 추계)

- 1차년도: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단가

- 2차년도~5차년도: 전년도 인건비 x 처우개선을 3% 적용(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 향후 단가 및 처우개선에 따라 소요비용 변동 가능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18,526,046	19,081,827	19,654,282	20,243,910	20,851,227	98,357,292
	지방세수입						
시비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합계		18,526,046	19,081,827	19,654,282	20,243,910	20,851,227	98,357,292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장학사	황은영
입안주관부서	행정관리담당관	통보일	2024. 10. 8.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안 별표 3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 개정(안)은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에 따른 특정직 공무원 정원 조정에 대한 별표 3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따라서, 동 개정(안)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정원 관련 규정 정비가 목적이므로 부패 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4A서울교육026			
정 책 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전은산	전화번호	02-2282-8644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여인진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4년 10월 07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4년 10월 07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0월 07일				

【별첨 6】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전은산 (02-2282-8644)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마한열(위원장), 김상일, 이민철, 이정현				
해당조항	검 토 의 건					검 토 결 과
제2조 제3조 별표3	- 본 개정안은 늘봄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증원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됨. - 본 개정안은 특정직 정원 154명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원안에 동의하나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증원 규모가 현저히 부족하여 한 명의 늘봄지원실장이 여러 학교를 맡는 상황이 우려됨. -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또는 순환 배치 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정적인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늘봄지원실장의 배치 기준 및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 - 아울러, 조례안 개정 이후 늘봄학교 운영 인력(늘봄지원실장 등) 및 관련 예산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함.					원안 동의 (개선권고)

【별첨 7】관계법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8.>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

4.6.11., 2016.12.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 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 3.5.8., 2013.12.4., 2018.2.27.>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 육전문직원의 정원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 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5. 8.>
-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 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